

국 토 교 통 부

시 정 요 구

제 목 기술사용료 설계변경 미 이행

기 관 명 부산광역시

내 용

부산광역시(○○본부)에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총사업비의 100%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아 2014. 12. 15. 부산광역시 ○구 ○○로 000, ○○빌딩 000호(○○동)에 있는 ○○종합건설(주)(대표자 ○○○)와 ‘○○권 ○○○ 의·과학 일반산단 진입도로 건설공사’를 총 공사부기금액 19,631,498,000원¹⁷³⁾에 도급 계약하고 같은 해 12.17. 착공하여 2017. 12. 15. 준공예정으로 시행 중에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2017. 1.23.)」 제4장제3절에 따르면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에서 기술사용료 지급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463호, 2014. 12. 10.)」 제6조에 따르면 기술개발자¹⁷⁴⁾가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용료¹⁷⁵⁾를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173) 2016. 12. 14. 총 공사부기금액 21,356,940,000원으로 최종 변경계약 됨

174) 건설기술진흥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업체를 말함

175)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의거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우하우비 및 동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함

따라서 신기술개발자가 하도급업체로 선정되어 직접 시공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기술사용료가 설계에 계상된 경우 이를 감액하여야 한다.

그런데 부산광역시(○○본부)에서는 ‘○○권 ○○○ 의·과학 일반산단 진입도로 건설공사’에 적용된 “○○보강재를 삽입한 ○○○○ ○○식 ○○○ 공법(건설신기술 제000호)”에 대하여 기술개발자인 ○○○○○(주)가 2016. 7. 25. 수급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시공에 참여하였는데도 기술사용료를 설계변경하여 감액하지 않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표】와 같이 기술개발자가 직접 시공에 참여하여 기술사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4건의 기술사용료 31,570,000원 상당을 설계변경하여 감액하지 않고 있다.

【표】 직접 시공한 신기술사용료 설계반영 현황

공종.공법 (신기술번호)	기술보유 업체명	신기술 보호기간	해당공사 계약일, 하도급업체	기술 사용료(원)	지급 여부	비고
4건				31,570,000		
○○보강재를 삽입한 ○○○○ ○○식 ○○○ 공법(건설신기술 제000호)	○○○○○(주)	2012.10.8.- 2017.10.7.	2016.7.25. ○○○○○(주)	31,570,000	미지 급	직접 시공
사면녹화 안정공법(○○○공법) (특허 제0000000호)	○○○○○(주)	2005.9.6.- 2025. 4.13.	2016.2.29. (주)○○○○ (통상사용권자)		미지 급	직접 시공
초기우수처리장치 (특허 제00-0000000호)	○○○○○○○(주)	2009.6.10- 2027.12.20	2017.1.26. ○○○○○○○(주)		미지 급	직접 시공
○○이 ○○를 이루는 ○○ 및 시공방법 (특허 제00-0000000호)	○○○○○(주)	2006.2.23- 2033.2.19.	2017. 4. 10 ○○○○○(주) 와 계약예정		미지 급	직접 시공

※ 부산광역시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부산광역시장은

[시정] 기술개발자가 직접 시공에 참여하여 반영할 필요가 없는 기술사용료 31,570,000원 상당을 설계변경하여 감액하시기 바랍니다.